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(위원회안)

의안 번호	8271

제안연월일 : 2008. 2. 22.
제 안 자 : 정치관계법특별위원장

제안경위

가. 제268회 국회(임시회) 제10차 본회의(2007. 7. 3)에서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, 제268회 국회(임시회 폐회중) 제1차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(2007. 7. 5)에서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소위원회가 구성됨.

나. 제268회 국회(임시회 폐회중) 제1차·제2차(2007. 7. 26, 8. 2) 및 제269회 국회(정기회) 제1차(2007. 9. 11)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소위원회에서 의원발의안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의견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,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다. 제271회 국회(정기회) 제1차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(2008. 2. 21)에서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심사·의결함.

제안이유

민주적 의사결정 및 당내경선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합리적인 정당 운영과 당내 민주주의의 보호·육성을 위하여 「정치자금법」제27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의 중앙당이 당대표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그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국고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의 중앙당은 그 대표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사무 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장의2 보칙, 제48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2항 중 “「정치자금법」 제25조(보조금의 계상)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정치자금법」 제25조제4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7장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장의2 보칙

제48조의2(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) ① 「정치자금법」 제27조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의 중앙당은 그 대표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(이하 이 조에서 “당대표경선”이라 한다)사무 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당대표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정당이 부담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이 당대표경선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(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) ① (생 략)	제30조(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
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제1항에 규정된 유급사무직원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「정치자금법」 제25조(보조금의 계상)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에서 당해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연간 평균인건비에 초과한 유급사무직원수를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.	②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「정치자금법」 제25조제4항에 따라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③ · ④ (생 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7장의2 보칙 제48조의2(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) ① 「정치자금법」 제27조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의 중앙당은 그 대표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(이하 이 조에서 “당대표경선”이라 한다)사무 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중앙

현 행	개 정 안
	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.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당대표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정당이 부담한다. ③ 제1항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이 당대표경선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